

# 法律參考奉仕에 관한 研究

洪 明 子\*

## 目 次

- |                    |                |
|--------------------|----------------|
| I. 研究目的 및 方法       | 3. 圖書館의 位置     |
| II. 法律參考奉仕의 一般的 考察 | IV. 法律參考奉仕의 內容 |
| 1. 法律參考奉仕의 意義      | 1. 學生          |
| 2. 法律參考奉仕의 特徵      | 2. 教授와 研究者     |
| 3. 法律參考奉仕의 種類      | 3. 法律實務家       |
| 4. 法律參考奉仕의 擔當機關    | 4. 立法關係者       |
| III. 法律參考奉仕를 위한 條件 | 5. 一般大衆        |
| 1. 法律藏書            | V. 提 言         |
| 2. 法律司書            |                |

## I. 研究目的 및 方法

圖書館學의 분야중에서 法律圖書館學(Law Librarianship)의 獨立性은 널리 공인되어 法律圖書館學分野의 專門家인 法律圖書館學碩士를 배출하는 교육기관까지도 나타나고 있다.<sup>(1)</sup> 원래 法律圖書館學은 先例拘束의 原理가 支配하고 있는 社會로서, 法域이 多樣하고 辯護士事務所와 企業內의 法律部門이 발달하여 상당한 법률자료를 갖춘 발전된 형태의 法律圖書館을 지닌 美國에서 특히 발달하였다.

우리나라는 大陸法國家이므로 美國과는 相異한 法律制度를 채택하고 있지만, 法治主義를 憲法理念으로 하고 있고 法律職 내지는 法律學의 社會的 位置가 상당하므로 法律學의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로서의 法律圖書館의 발전은 그 意義와 必要性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法律圖書館이 구비하여야

\* 曉星女子大學 圖書館學科

(1) 美國의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는 Master of Law Librarianship이라는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 2 도서관학논집

할 면모를 충분히 갖춘 엄밀한 의미의 法律圖書館이 전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물론 圖書館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미단 法律圖書館단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圖書館界 全般에 관한 문제점으로서, 經濟第一主義 國家政策上 圖書館奉仕가 비교적 낮은 順位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이밖에 法律圖書館의 生成 및 發展이 부진한 이유로서는 法律關係者側과 圖書館關係者側이 안고 있는 問題點을 들 수 있다. 우선 法律關係者側의 問題點을 본다면 종래 法律學의 敎授 및 研究方法으로서 몇몇권의 敎科書를 위주로 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圖書館이란 단순히 資料를 수집·정리·보존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圖書館側의 態度와 相關性을 지니는 것으로서, 즉 圖書館側이 法律分野란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特殊主題分野이므로 소극적으로 일차적인 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인 法律參考奉仕는 제공할 수 없다는 안이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法律圖書館學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이복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諸理由로 法律圖書館學은 이름조차 생소할 정도로 이념에 제대로 도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法律圖書館學은 발전하여야 할 추세에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社會變化에 따라 法律도 변하고 점차 專門化·複雜化의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 法律資料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複雜性을 지니게 되며, 法學敎育方法에 있어서도 英美式 事例研究方法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社會的 需要에 應하기 위하여서라도 필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法律圖書館은 法律情報을 提供하는 中心地로서 機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參考奉仕를 中樞의 機能으로 삼고 있는 特殊圖書館은 그 特色이 主題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奉仕에 있으며 특히 情報을 利用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sup>(2)</sup>

(2) Johnson, Ethel M. "The special library and some of its problems," *Special Libraries*, December 1915, pp.158—59.

Klempner, I.M. "特殊圖書館의 參考奉仕", Katz, W.A. 參考奉仕 2주년기념,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194.에서 재인용

特殊圖書館으로서의 法律圖書館에서 핵심적인 法律參考奉仕가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주안을 두고서 本稿를 作成하게 되었다. 즉 發達된 外國의 法律圖書館과 비교하여 現段階의 우리나라에서 法律參考奉仕를 담당하여야 할 社會的 責任을 부담하고 있는 몇몇 圖書館의 奉仕實態를 파악함으로써 法律圖書館學의 도입을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研究目的이다.

法律圖書館이 발달된 나라의 奉仕內容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文獻을 통하여 주로 美國의 法律參考奉仕에 대해 調査하였고, 우리나라의 實態는 필자가 임의로 몇개의 圖書館을 선정하여 그 圖書館을 방문한 후 擔當者와 인터뷰함으로써 조사하였다.

## II. 法律參考奉仕의 一般的 性質

### 1. 法律參考奉仕의 意義

律圖書館이란 法律文獻을 더 울리어 法律問題의 해 결을도와여주는 기관이다<sup>(3)</sup> 여기에서 法律文獻이라고 하는 것은 法律을 研究하거나 實務上으로 필요시되는 情報를 수록한 資料를 일컫는다. 그런데 社會制度和 法規體은 攸리관계를 지니므로 社會가 專門化·複雜化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法制度가 나타나게 되고 자연적으로 法律文獻 역시 폭증하게 마련이다. 오늘날과 같이 既存法의 改廢, 新法의 制定이 빈번하여 資料로서의 法律文獻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法律情報를 必要로 하는 利用者가 스스로 그에게 필요한 情報를 效果的으로 檢索할 수 있도록 專門의 知識을 갖추고 있기는 곤란한 일이므로 전문가에게의 의뢰도가 크게 된다. 즉 아무리 法律知識을 충분히 갖추고 있더라도 文獻檢索에 필요한 지식까지 결비한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效果的인 情報奉仕를 위하여는 法律文獻에 수록된 情報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法律學과 圖書館學 兩分野에 관한 전문지식을

(3) Jacobstein, J.M. "Law Library Administration," *Library Trends* Vol. 11, No. 3, January 1963. p.237.

#### 4 도서관학논집

구비한 專門家의 출현이 사회적으로 요청된다. 이들 專門家가 要求者를 위하여 適時에 제공하는 正確한 情報 다시말하면 충분한 法律參考奉仕를 기반으로 하여서 法律文化는 발전될 수가 있는 것이다.

### 2. 法律參考奉仕의 特徵

法律參考奉仕는 法律이라는 特殊主題에 관련된 情報奉仕를 그 內容으로 하고, 法律圖書館이라는 特殊圖書館에서 이루어지므로 一般參考奉仕와는 다른 양상을 지닌다.

그 특징을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法律參考奉仕는 參考奉仕上 使用되는 文獻이 주로 法律文獻이며, 그 利用者 역시 法律問題와 관련된 고객층에 국한되어 있고, 要求되는 奉仕의 內容 또한 一般參考奉仕와는 달리 法律問題의 解決에 대한 案內라는 특성을 지닌다.

둘째, 一般參考奉仕에 있어서도 最新資料를 活用한 最新情報의 提供이 필요하기는 하나, 法律參考奉仕에 있어서는 더욱 이 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특수한 例外的인 경우 다시말하면 法制史的 研究 혹은 特定時代의 舊法에 관한 檢索要求를 제외하고는 最新法에 관한 正確한 情報提供이 매우 重要性을 지닌다. 法現象이란 停滯狀態에 있는 것이 아니라 變化하고 있으므로 현재 發效중인 法令·學說·判例 등 最新情報를 제공해야만 法律問題解決에 도움을 줄 수 있고, 不正確한 情報提供은 이용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危害를 발생시킬 우려까지도 있으므로 특히 最新性이 요망된다.

셋째, 法律問題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얽혀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論點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당해 문제에 관련된 諸資料를 종합하여 비교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法律參考奉仕에 필요한 각종자료는 그 자료가 參考資料인가 아니면 一般資料인가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貸出이 禁止되고 있으며, 研究上 불가피하거나 法院에 立證資料로서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몇시간 정도의 貸出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 3. 法律參考奉仕의 種類

參考奉仕란 利用者를 도와주는 일련의 작용을 말한다. 이용자에 대한 지원은 직접 그들의 明示된 要求를 들어주는 直接的인 參考奉仕와 利用者의 圖書館利用 및 資料利用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間接的인 參考奉仕의 두가지 方法이 있다. 法律參考奉仕分野도 이와 마찬가지로 두가지의 奉仕部門으로 區分되고 있다.<sup>(4)</sup>

하나는 直接法律參考奉仕로서, 法律問題의 해결을 위하여 法律主題에 관한 情報을 要求하는 利用者를 대상으로 法律文獻에 수록된 必要한 情報을 檢索 提供하는 奉仕이다. 이때 司書는 法律實務家가 아니므로 法律文獻上에 나타난 情報을 제공하는데 그쳐야 한다. 直接 利用者를 대상으로 한 法律參考奉仕의 다른 한가지는 利用者들이 圖書館에 所藏된 資料와 圖書館施設을 충분히 利用할 수 있도록 教育하는 것이다. 司書의 限定된 能力과 時間을 利用者가 최대로 活用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利用者 스스로 자금자족이 가능한 단순정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와같은 教育이 先行되어야 하겠다. 즉 利用者가 요구하는 情報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要求된 法律問題와 관련된 資料로서는 어떤 것이 있다는 자료제시에 그친다든가, 제시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등 안내를 하여줌으로써 이와 유사한 法律問題에 부딪쳐 資料를 檢索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스스로 對處할 수 있도록 教育하는 것이다.

法律參考奉仕의 두번째 종류로서는 間接參考奉仕를 들 수 있다. 이는 利用者가 圖書館을 利用하거나 所藏된 資料를 活用할 때 보다 效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게끔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奉仕이다. 이용자의 顯在的 要求에 即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豫상하여 대비하는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必要視

(4) Straker, C. "Law libraries—development, direction, service," *Law Library Journal* Vol.57, No.1, February 1964, p.18.

Straker는 이 글에서 direct or major service와 indirect or subsidiary service의 兩者로 區分하고 있다.

## 6 도서관학논집

되리라고 예측되는 자료의 積極的 選擇과 不必要한 資料의 除籍, 各種書誌의 作成과 보다 나은 참고봉사의 운영을 위한 既存奉仕內容의 評價, 參考業務部署의 組織化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 봉사이다. 이밖에 photocopying, filing, microform 및 reader-printer, exhibit와 도서관에 관한 弘報資料의 發刊이 모두 圖書館施設 및 圖書館資料의 利用을 확보하기 위한 봉사로서, 간접적으로 이용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 4. 法律參考奉仕의 擔當機關

法律參考奉仕는 法律學이라는 殊特主題에 관련된 情報要求를 가진 利用者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利用者의 專門의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法律藏書와 主題專門家로서의 法律司書를 구비한 法律圖書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法律圖書館의 類型으로는 辯護士會에 附設된 圖書館(Bar Association Libraries), 法律事務所에 附設된 圖書館(Law Firm Libraries), 法院 및 檢察廳에 附設된 圖書館, 法科大學에 附設된 圖書館 그리고 公共圖書館 등을 들 수 있다.

## Ⅲ. 法律參考奉仕를 위한 條件

人間은 그의 要求가 達成되었을 때에 만족을 느낀다. 圖書館에 대해 情報要求를 할 경우에도 기대된대로의 충분한 情報가 제공되어야만 만족감을 지니고 나아가서는 圖書館이라는 기관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특히 社會生活上의 利害關係와 直結되어 있는 法律問題에 관하여 도움을 받고자 할 때라면 要求充足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法律問題를 안고 圖書館에 찾아오는 利用者를 만족시키기 위하여는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適時에 제공해 줄 수 있도록 諸般條件의 구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 1. 法律藏書

法律圖書館은 各種 生活關係에서 야기되는 法律問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利用者들에게 적절한 해결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충분한 法律文獻들로 구성된 法律藏書를 갖추어야만 한다. 언제 어떤 問題를 안고 圖書館門을 두드릴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社會生活關係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法律問題를 예상하고서 必要한 資料를 모두 갖추어야만 法律參考奉仕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이용자들은 그들의 質問이 即刻의인 答辯으로 나타나기를 요망하므로 이를 위하여는 미리 필요한 資料를 所藏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다. Hicks는 法律藏書의 重要性을 다음의 말로 간파하고 있다. 즉 “적절한 法律藏書는 法律分野뿐 아니라 그 社會組織의 研究를 위한 資料의 集合體이다. 그러므로 法律的 아이디어의 형성을 위하여는 물론이고 法을 형성시킨 社會政策의 理解를 위하여도 필요한 資料이다.”<sup>(5)</sup> 이와같이 法律圖書館의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法律藏書의 質을 높이기 위하여는 實效性을 지닌 資料의 충분한 所藏과 不必要한 資料의 除籍作業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失效된 資料를 계속 비치함은 不正確한 情報提供의 위험성을 유발하기 쉽고 法律問題解決에 지장만을 초래하며 결국은 圖書館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할 우려까지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法律藏書를 구성하는 法律文獻은 法律自體에 대한 記錄일 뿐 아니라 法律을 說明·批判·評價한 것으로서, 法律을 발견하고 理解하며 適用하기 위한 基本道具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社會의 變遷과 더불어 法 역시 항상 變하므로 法制度의 變更에 即應한 資料의 刊行과 補遺·追錄이 이루어져야만 現實性 있고 살아있는 最新의 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오늘날 전통적인 圖書形態以

(5) Hicks, F.C. *Yale Law Report*, Vol.6, No.2, 1959, pp.12-13. quoted in Allen, C. "Law Libraries and Collection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 Allen Kent, XIV, 1975, p.88.

외에 非圖書形態의 資料로서 發刊되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圖書館은 이러한 형태의 자료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비한 후 整理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대본을 발간한 후 追錄形態로서 法律의 制定·改廢에 대처하도록 마련한 경우에는 加除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고, 叢書의 형태로서 계속 발행되는 資料에 대해서는 缺本없이 完帙을 구비해야만 성공적인 法律參考奉仕의 전제조건인 法律藏書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法律文獻은 그 文獻이 成立된 權源(Authority)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法令·判例·行政報告書 등과 같이 一次的 權源(primary authority)에 의한 자료와, 法律教科書·百科事典 등과 같이 前者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二次資料로 나눌 수가 있다.<sup>(6)</sup>

法律資料도 一般資料와 마찬가지로 일단 圖書館에 들어온 후에는 利用者들의 용이한 이용을 위하여 體系化되어야 한다. 그런데 一般圖書館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이 法律圖書館에 그대로 適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法律資料 利用者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法律文獻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組織化하는 것이 필요하고<sup>(7)</sup> 合理的인 體系에 의한 整理過程을 거쳐야만 法律資料를 통한 法律參考奉仕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다.

## 2. 法律司書(Law Librarian)

司書란 圖書館이라는 社會的 機關이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專門人이다. 圖書館에 부여된 機能은 주로 圖書館에 所藏된 資料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資料가 지닌 價値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資料와 利用者를 매개시켜 주는 役割을 司書가 擔當한다.

法律圖書館의 法律司書는 法律文獻이라는 特殊主題에 관한 資料를 통하여 法律情報을 要求하는 特殊한 利用者에게 奉仕하는 專門人이다. 환언하면 利

(6) Heckel, J.W. "Service to readers," *Library Trends* Vol.12, No.1, January 1963. p.271.

(7) Jacobstein, J.M. "Law library administration," *Library Trends* Vol.12, No.1, January 1963. p.238.



用者の 情報要求內容과 活用되는 資料의 兩面에서 法律이라는 特殊分野와 연관되므로 一般司書와는 달리 法律分野에 관한 專門知識이 있어야만 제대로 奉仕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즉 法律에 관한 專門의 情報를 제공해야 할 業務를 擔當하는 法律圖書館의 司書는 圖書館學의 知識을 專門인 法律資料에 適用할 수 있도록 圖書館學과 法律學 兩分野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반드시 지녀야 한다.<sup>(8)</sup> 이는 다른 主題分野보다 法律의 複雜性이 현저하여 문의한으로서는 쉽게 접근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法律司書가 갖추어야 할 法律知識은 正規法學教育을 통하여 습득하고 法律的 精神(legal mind)의 보유를 위한 훈련을 쌓아야만 하겠다.

뿐만아니라 法律資料를 통한 奉仕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情報를 효과적으로 檢索하기 위하여 法律藏書 특히 既存法律參考資料에 대해 깊은 知識을 지니고 그 組織內容에 대하여도 친숙함으로써 資料가 내포하고 있는 것을 심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利用者の 情報要求에 소극적으로 봉사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要求動機를 자극하여 資料를 통한 奉仕를 유발하는 積極的 司書로 활동하도록 新刊資料와 發刊豫定資料 등에 대한 迅速한 情報도 미리 입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만 하겠다.

法律圖書館에서 效果的인 奉仕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충분한 資格을 지닌 人員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問題點은 개발도상국가의 공통적인 과제로 되고 있다.<sup>(9)</sup> 여기에서 충분한 資格이란 上述한 바 두가지 分野 즉 法律學과 圖書館學에 관한 지식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現實的으로 業務의 擔當者가 이러한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法律圖書館의 利用者가 司書를 신뢰하기는 커녕 輕視하는 현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不信하는, 그리고 不信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效果的인 奉仕를 기대하기란 매우 곤란한 것이다. 그러므로 法律司書로서의 牲品 및 能力과 資質 등

(8) “하바드大學圖書館：法律圖書館을 中心으로”, 國會圖書館報 第2卷 10號, 1965, 10, pp. 82-83. 하바드大學의 圖書館에서는 法律參考奉仕를 擔當하는 司書에게 있어서는 圖書館學의 知識보다 法學에 관한 소양을 우선시 하고 있다.

(9) Roalfe, William A. “Some observations on the development of law library service in the emerging nations,” *Law Library Journal* Vol. 57, No. 4, November 1964. p. 396.

의 면에서 內實을 갖춘 法律司書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그들이 擔當해야 할 機能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충분히 認識 즉 그들의 役割認識 (recognition of role)를 정확히 한 후 參考奉仕를 擔當하게 될 때 면모를 제대로 갖춘 봉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參考司書에 의해 法律參考奉仕를 제공받은 經驗이 있는 利用者라면 法律圖書館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圖書館이라는 機關에 대하여 그 社會的 機能을 충분히 깨닫게 될 것이다. 機械化의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는 작금 機械化에 앞서 풍부한 能力을 지닌 人間頭惱를 활용하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3. 圖書館의 位置

이용자가 圖書館에 가벼운 마음으로 드나들 수 있으려면 우선 圖書館이 가까운 거리에 位置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 수시로 갈 수 있고, 가고자 마음먹었을 때 별 부담없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法律問題解決의 寶庫가 마련되어 있다면 어떤 다른 要素보다도 利用자가 圖書館을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重要한 與件이라고 본다. 圖書館이 利用하기에 불편하도록 遠距離에 있어서 非利用을 유발할 정도인 경우에는 이용하기 편리한 場所로 옮기든지 아니면 分館 정도라도 設置함으로써만이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法の 生活化에 의하여 法律圖書館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美國과 같은 나라에서는 公共圖書館에 속하는 法律圖書館은 法律實務家인 法曹人和 複雑한 法律問題에 당면해 있는 一般人的 集結地인 法院構內에 설치하는 경우<sup>(10)</sup>도 있다. 그리고 法科大學의 效果的인 法學教育을 지원하는 法科大學圖書館을 一般中央圖書館과 獨立하여 自治的으로 운영하도록 分散化(Decentralization)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즉 전체 法科大學의 70% 이

(10) Brock, C. "Law librarians and libraries; a revisionist history or more than you ever wanted to know," *Law Library Journal* Vol.67, No.3, August 1974. p.333.

上이 自治化를 취하여 운영되고 있다.<sup>(11)</sup> 이와같은 自治化(Autonomy)의 論理의 根據로서 다음의 세가지 사항<sup>(12)</sup>이 주장되고 있다. 첫째, 法科大學 圖書館은 法學教育을 위한 必須的 要素다. 둘째, 中央圖書館의 館長은 法律圖書館에 기대되는 特殊한 要求에 대하여 별로 친숙하지 않고 또 직접적 책임이 크지 않으므로 法科大學에 統制權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中央圖書館에 法律圖書館을 附屬시킨다면 法律圖書館奉仕의 量的·質的 低下를 초래하게 된다는 理由가 열거되고 있다. 특히 美國 州立大學校의 경우 그 州立 法科大學의 출신이 州議會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므로 母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法科大學 圖書館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충실화 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自治化 運營方法이 가일층 채택되고 있다. 美國 法學教育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는 ABA(American Bar Association)는 다음의 건의문<sup>(13)</sup>을 각 法科大學에 전달하고 있다. 즉 法科大學의 學長·法律 司書·教授會 등이 法科大學圖書館의 정책수립에 책임을 져야하고, 法律圖書館의 豫算은 法科大學豫算의 일부로 구성되며, 法律司書의 任免權은 法科大學의 學長 및 教授會가 지니도록 권고하여 自治化의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물론 法科大學圖書館의 自治化與否는 그 大學의 規模·캠퍼스의 位置·財 政事情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法律圖書館이 法學教育上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自治化가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法科大學이 大學校 內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오랫동안 크게 인식되어 왔고 이와같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즉 學生들의 專攻科目決定에 있어서의 選好度, 大學行政에 있어서 法學教授의 참여 및 學生活動에 있어서의 法科大學生의 참여도 등 大學校內에서 뿐만아니라 社會生活面에의 活用度 등이 모두 이를 反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하게 인식

(11) Allen, C. "Law libraries and collection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 Allen Kent, XIV, 1975. p.93.

(12) Jacobstein, *op.cit.*, p.239.

(13) Allen, *op.cit.*, p.93.

되고 있는 法學教育의 內實化를 위하여는 法律圖書館의 충분한 活用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므로 法學教育의 成敗를 가름할 前提的 施設로서의 法律圖書館의 育成은 재언할 여지없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中央集中式 運營方法下에서는 法律圖書館에 적합한 운영이 기대되기 어려우므로 예산권 및 인사권을 法科大學에 귀속시킨 후 法科大學 및 法律圖書館을 살릴 수 있는 政策的인 배려를 시도함으로써 法學教育의 內實化 나아가서는 法の 生活化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리라 본다.

#### Ⅳ. 法律參考奉仕의 內容

奉仕란 反對給付를 條件으로 그것과 同等한 價値의 內容을 提供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相對方으로 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無條件으로 一方的인 提供만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奉仕가 제대로 이루어질려면 주는 側과 받는 側의 兩方이 각기 奉仕精神에 입각하여 주고 받는 입장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圖書館이 奉仕機關으로서의 社會的 使命을 지니고 있다는 點은 널리 認定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에서 이루어지는 奉仕 역시 奉仕精神에 입각하여 奉仕를 提供하는 側과 이들에 의하여 附與되는 奉仕를 기꺼이 받으려는 側으로 구성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고, 前者는 圖書館의 司書, 後者は 利用者로 지칭될 수 있다.

圖書館의 人的 構成要素로서의 司書가 어떤 사람인가는 奉仕의 內容을 決定하는 重要要素이다. 司書가 利用者에게 충분한 奉仕를 提供할 수 있을 정도로 奉仕精神이 투철하고 業務를 통하여 利用者들에게 효과적인 奉仕를 提供할 수 있도록 職務와 관련된 知識과 訓練을 兼備한 사람일 때 바람직한 奉仕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奉仕는 一方의 勞力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他方이 奉仕를 받고자 하는 積極的 慾求 및 受容態勢를 갖추고 있을 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奉仕에 있어서도

利用者가 司書에 의하여 提供되는 奉仕를 받아들여서는 肯定的 態度에 의해서만이 바람직한 奉仕가 기대될 수 있겠다.

圖書館은 主된 奉仕對象이 어떤 利用者層인가에 따라 學校圖書館·大學圖書館·特殊圖書館·公共圖書館으로 區分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館種에 따라 각기 相異한 內容의 奉仕가 이루어지고 있다.

法律參考奉仕의 利用者層을 분석하던 크게 學生, 研究者와 教授, 法曹人 기타 實務家, 立法關係者 및 一般大衆 등 5種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前述한 바와 같이 法律圖書館의 要素를 충분히 갖춘 엄밀한 의미의 法律圖書館의 存在를 否認함이 과하지 않을 정도이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上述한 5種의 利用者層에게 法律圖書館의 奉仕機能을 部分的으로 擔當하거나 擔當해야 할 社會的 使命이 있다고 생각되는 圖書館을 筆者가 任意로 選定하여, 이들 圖書館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奉仕內容의 實態를 조사한 후 外國에서 제공되는 봉사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 1. 學 生

### (1) 外 國

美國法學教育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ABA가 일찍이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 to the Bar를 설치한 후 1921年 다음과 같은 결의문<sup>(14)</sup>을 채택하였다. 즉 辯護士志望者는 일정한 基準에 따른 法科大學을 졸업한 者임을 要한다고 한 후 그 基準가운데 “學生이 利用할 수 있는 充分한 內容을 갖춘 圖書館을 具備할 것”을 하나의 項目으로 設定하고 있다. 美國社會에 있어서 辯護士의 社會的 地位와 機能은 他職種에 比較되지 않을 정도로 특히 重視되고 있고, 이들의 專門團體인 ABA의 對社會 내지 對 法科大學에 대한 입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法律圖書館 具備에 관한 요구는 어길수 없는 지상명령에 해당되는

(14) 裴載湜, “法曹教育制度,” 韓國法學教授會編, 韓國의 法學教育, 서울, 韓國法學教授會, 1971. p. 225.

것이다. 그후 1958年 同委員會는 “圖書館利用은 法科大學 教育課程上 必須不可缺한 要素이다. 이와같은 教育課程이 最大 效果를 얻기 위하여 外界의 統制없이 自治的인 組織體로서 法科大學에 의하여 運營되어야 한다”<sup>(15)</sup>라고 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同委員會는 法科大學교육과 圖書館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하여 피력한 후, 資料·職員·奉仕 등의 모든 면에서 一般圖書館과는 현저히 다른 特徵을 지닌 法科大學圖書館의 효과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自治化를 권고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法科大學이 自治化된 法科大學圖書館으로 運營되고 있으며, 法律圖書館 중에서 가장 奉仕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圖書館種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法律參考奉仕는 法科大學의 教科目 및 教授方法과 밀접한 相關關係를 지닌다. 美國에서는 주로 事例研究方法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부과된 숙제를 하거나 判例批評을 할 때 그리고 論文을 作成하거나 모의제판을 준비할 때, 法律圖書館은 그들의 學業에 필수적인 作業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므로 法律圖書館이 法科大學에 直接 혹은 間接으로 참여하여 지원해야 할은 자명한 사실이다.

東西를 막론하고 情報需要에 충분히 對處할 수 있는 人員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요원한 상태이고 制限된 數의 職員에 의한 奉仕가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을 야기시켜 學生들이 필요한 情報를 자금자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限定된 數의 法律司書가 利用者의 情報要求에 골고루 만족을 줄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비교적 단순한 問題에 대하여는 학생 스스로 필요한 情報를 檢索하도록 시도하고, 보다 고도의 技術과 知識이 소요되는 情報檢索에 대하여만 司書에게 의뢰함으로써 專門家의 專門知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기로로서 美國法科大學에서는 法律研究에 필수적인 資料의 利用法을 講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資料利用講座의 有無에 대한 實態調査에 의하면 조사대상 법과대학 120개교 중 실시하는 학교가 40개교,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80개교

(15) Allen, *op.cit.*, p.93.

로 나타나 전체의  $\frac{1}{3}$ 이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講座의 擔當者는 法律圖書館長이나 法科大學教授가 일반적으로 담당하고, 1學年에 1학기간 필수과목으로 부과하며 이때 學點까지도 부여하고 강의는 교과서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16)</sup> 公式的인 강의를 통하는 방법 이외에 法律司書가 강의실을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sup>(17)</sup> 圖書館 및 資料의 利用法에 대하여 個別指導하며 특히 大學院生에 대하여는 主題에 관한 資料의 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준다.<sup>(18)</sup>

이밖에 對學生奉仕로서 學生들이 숙제를 하거나 判例批評·report作成 그리고 모의재판을 준비할 때 필요로 하는 情報를 제공해 준다. 利用者의 情報要求에 대해 응답하여 주는 봉사 이외에 타이핑 시설, 복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法律文獻의 microfilm化 및 reader-printer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 (2) 우리나라

관공민비사상이 만연되어 官에의 등용문으로서 기능했던 法科大學을 重視하는 전통적 잔재는 오늘날에도 원저히 남아있다. 法科大學 내지 法學科를 설치하지 않은 大學校가 별로 없을 정도이고, 우수한 학생의 法學科 지방률이 높은 실정으로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法學教育의 重要性을 절감하면서도 그 教育의 實效性을 좌우하는 法律圖書館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커다란 맹점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一般資料와 함께 法律資料가 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고 中央圖書館의 一般參考室에서 제공되는 단편적인 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中央圖書館과 獨立된 별도의 自治的인 法律圖書館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다만 경우

(16) Sadow, S. and B.R. Beede. "Library instruction in American law schools", *Law Library Journal* Vol.68, No.1, February 1975. pp.27-32

(17) Cole, G.L. "The subject reference librarian and the academic departments; a cooperative venture," *Special Libraries* Vol.67, No.7, July 1974. p.261.

(18) 한상완, 大學圖書館參考/情報業務에 있어서 主題專門家の 機能에 관한 研究, 저술,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76. p.22

에 따라 中央圖書館內的 별도의 장소에 法律資料를 한곳에 모아 두는 경우, 法學科 科事務室의 연구실 혹은 法科學生을 위하여 마련된 讀書室(研究室)에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우리나라의 法學教授方法은 종래 講義式方法에 의하여 교과서를 中心으로 한 考試爲主教育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점차 事例研究方法이 강화되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각종 法律에 관한 演習講座를 설치하고 있으며, 法律實習의 한 과정으로서 대부분 모의재판을 실시하고, 基本法講座에 있어서도 判例 및 學說批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學期末 report作成 및 卒業論文作成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法律文獻을 토대로 한 法律研究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따라서 圖書館은 法學教育을 위하여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나 뚜렷한 情報奉仕가 눈에 띄지 않는다. 講義式 教育方法에 젖어 온 教授에게서 法學研究方法에 관한 훈련을 별로 받아 보지 못한 學生들은 스스로 情報檢索을 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도서관에서도 法律에 관한 專門인 奉仕를 받을 수 있도록 與件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學生들은 현실적으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들의 學業進行에, 그리고 졸업 후 法律專門家로서 일하게 될 때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資料利用講座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全無한 상태이다. 물론 講座 擔當者로서의 資格을 구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대두될 수는 있으나 圖書館에서 효과적인 法律參考奉仕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정하에서는 특히 講座의 설치가 요망된다.

## 2. 教授와 研究者

### (1) 外國

化學者와 物理學者에게는 實驗室이, 動物學者에게는 自然史博物館이, 植物學者에게는 植物園이 그 學問分野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이듯이, 法律研究者에게는 法律圖書館이 매우 重要性을 지니는 作業場이다. 外國에서는 法律圖書館이 研究를 위한 作業場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먼저 法律學教授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그들은 교과목 운영상 필요한 각종 도움을 法律圖書館司書로 부터 받고 있다. 즉 法律司書는 教科目에 관한 書誌를 作成하여 주고 강의에 필요한 자료가 도서관에 신속히 그리고 충분히 비치되도록 도와주며 자료이용에 대한 지도를 할때 그들을 도와준다.<sup>(19)</sup> 이처럼 法律司書와 法科大學教授와의 우호관계 형성은 兩方에게 모두 이롭고 바람직한 교육의 실질을 가능하게 해준다.

教授들은 講義準備뿐 아니라 一般研究者와 마찬가지로 그의 個人研究活動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研究過程上 法律圖書館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얻고 필요한 정고를 제공받는다. 이때 연구자 스스로 檢索하는 경우가 물론 많지만 資料專門家로부터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받고자 의존하는 경우도 흔하다. 同一한 主題에 관한 研究라도 그 研究者가 누구인가에 따라 研究의 方法이 다르고 그 길이에도 차이가 있게 되므로, 요구되는 資料의 範圍나 要求되는 情報內容 역시 상이할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연구자에게 적당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研究者에게 부여되는 奉仕의 內容을 검토해 보면 우선 研究主題에 관한 書誌作成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하여 各種 書誌道具의 철저한 검색과정을 거쳐야 한다. 法律資料의 효과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indexing을 하고, 判例·法令 등 각종 法律資料를 file하여 비치하고 있다. 또한 特定文獻의 檢索 및 法律情報의 제공도 요구되고 있으며 新刊法律資料에 관한 contents sheet service, current awareness service 등도 행해지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個人所藏을 원할때 자르를 추천한다든가 稀貴資料의 購入時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봉사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個人藏書의 整理, file에 관한 助言등을 하고 이밖에 法律研究活動에 관한 資料와 文書등을 보관하는 등 直接的·間接的 形態의 參考奉仕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2)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成文法主義를 채택하고 있어서 法律解釋을 위한 學說이 法律

(19) Cole, *op.cit.*, p.261.

研究上 重要性을 지니고 있다. 研究者들은 필요한 學說을 검색할 때 주로 敎科書나 註釋書 등 資料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學說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法으로서의 判例 역시 점차 증시되고 있다. 즉 그들의 研究結果가 설득력있게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론으로 확립되기 위하여는 判例에 바탕을 둔 論證을 시도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判例撰錄을 통해 既存判例보다 합리적인 判例를 유도하기 위하여도 더욱 判例를 활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法律學者들은 이러한 學說과 判例를 스스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개인조수의 도움을 얻어 찾고, 圖書館職員의 도움은 거의 받지 않고 있어서 圖書館資料를 利用한다는 면에서만 圖書館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書誌作成에 있어서 司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그들이 작성한 書誌에 의거하여 特定文獻의 검색만을 요구하는 것이 고작인 형편이다. 이와같이 圖書館職員에 의한 參考奉仕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圖書館의 情報奉仕機能에 대한 研究者의 인식부족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요인은 司書에 대한 不信으로부터 초래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3. 法律實務家

法治主義社會에서는 모든 社會關係가 法에 의하여 設定·維持되고 있으므로 法律專門家の 활동이 활발하다. 本稿에서 法律實務家라고 하는 것은 法律運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法官, 辯護士, 檢事, 法院과 檢察廳의 一般職職員, 辯護士事務所의 職員, 執達吏, 司法書士 등 法律關係從事者를 총칭한다. 이들은 法律問題에 관한 專門知識을 구비한 法律專門職이므로 實務上 제기되는 法律問題에 관한 깊은 情報를 요구할 것이다. 三審制가 확립된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合理的인 法律解釋에 의하여 그릇된 法律適用이 없도록 이미 내려진 法院의 判例檢索을 증시할 것이다. 實務家들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正確한 情報를 適時에 제공하는 것이 당면문제의 유리한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여 社會生活에서의 成敗를 관가름하는 要素가 되고 있으므로

특히 중요하다. 法律實務家들은 자기 그들에게 부여된 社會的 使命이 다르다. 同一한 法律問題에 직면하였더라도 相反된 利害關係를 지니는 이들은 각각 다른 目的意識을 갖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解決을 시도할 것이므로 要求되는 情報內容이 다를 수밖에 없고 適合한 情報를 제공받아야 만족할 것이다. 法律實務家들은 그에게 안겨진 法律問題의 合理的 解決方法의 강구에 고심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검색은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法律司書에의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이때 法律司書가 주의하여야 할 점은 圖書館的 質問(library question)과 法律的 質問(legal question)을 명백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法律司書는 法律實務家와는 엄격히 독립된 分野에 종사하므로 法律實務家의 專門領域을 침범하여 法律自體를 解釋·說明하거나 法律相談을 해서는 안되고 法律資料를 통한 奉仕者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지켜야 한다. 따라서 명백히 法律的 質問에 해당하는 요구를 할 때에는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때 質問의 형식만을 기초로 하여 피상적으로 거절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質問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한 후 圖書館에서 제공할 수 있는 봉사는 제공해야 한다. 同一한 事件에서 對立하는 입장에서는 法律實務家의 情報要求를 함께 접하게 될 경우에는 奉仕過程上 知得한 事實 즉 一方의 情報要求內容 및 提供된 情報內容을 他方에게 알려 정보 누설을 해서는 안된다.

### (1) 外 國

法律實務家들은 實務上 당면하는 法律問題에 관한 情報를 얻기 위하여 法院·檢察廳·辯護士會·法律事務所 등에 부설된 圖書館을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이들 法律圖書館에서 제공되는 奉仕의 내용을 나열한다면, 우선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형태로서 判例檢索을 들 수 있다. 判例를 통하여 그들은 特定法律問題에 관한 判決文·判決理由 및 判決文上에 표현된 權利의 內容이 무엇인가를 제시받을 수 있다. 그리고 特定文獻의 檢索 및 資料要求에 대하여 그 圖書館에 所藏된 資料 내지는 다른 圖書館資料의 利用까지도 안내해 준다. 이밖에 法律關係資料에 관한 clipping service, 각종 文書나 記

錄 등의 보관과 index作成, 그리고 特殊分野關係資料의 활용을 지원하는 書誌作成 등이 있다. 이밖에 法律參考奉仕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성이 없는 實務家再教育 program을 法律圖書館이 실시함으로써<sup>(20)</sup> 전문가로서의 기능수행의 원활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 (2)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法律實務家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圖書館으로서 大法院圖書室과 檢察廳中央圖書室이 있는 정도이고, 韓國辯護士의 대표적 專門家團體인 大韓辯護士會에는 圖書室이 없으며 그 산하단체로서의 서울辯護士會에 附設된 圖書室이 있기는 하나 유명무실하다. 비교적 圖書館奉仕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圖書館은 大法院圖書室인데, 이 도서관은 法官과 法院一般職 職員들이 주어질 法律問題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도로써 同質의 事件에 대하여 내려진 判例의 檢索을 하고자 이용된다. 이 圖書館에는 國內외의 判例集이 알코푸 갖추어져 있어서 判例檢索要求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밖에 學說檢索등의 요구에 대비하여 各種 法律分野에 관한 資料도 갖추고 있다. 判例檢索·學說檢索은 대부분 實務家 스스로 검색하고, 特定한 判例나 學說의 消極的 檢索要求만이 단편적으로 요구될 뿐 깊은 정보의 요구는 별로 없다. 그러나 圖書館에 소장된 자료의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藏書目錄을 發刊하고 新着資料에 대한 案內資料도 發刊하며, 그 도서관에 受入되는 法律學關係 外國定期刊行物에 대해 目次를 복사하여 法官에게 배포하는 contents sheet service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大法院의 주요 관심주제인 司法制度에 관한 記事를 한데 모아 利用者에게 제공해 주고, 大法院에서 발간되는 判例 card를 file하여 이용시키고 있다.

檢索廳에도 圖書室이 부설되어 있고 특히 參考閱覽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참고봉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特定資料의 檢索을 要求하거나, 公益의 代辯者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當面 法律問題

(20) "Checklist of media and techniques for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n law libraries," *Law Library Journal* Vol.61, No.1, February 1968. p.26.

와 관련된 外國의 立法例·判例등을 特定한 후 이들에 대한 檢索要求가 고  
 작이다. 이밖에 所藏資料의 내용을 밝혀주는 藏書目錄이 발간되었고, 新着資  
 料에 관한 案內가 公文形式으로 발간되어 回覽되고 있다.

### 3. 立法關係者

社會가 복잡해짐에 따라 國民의 生活關係가 복잡해지고 그 生活關係를 규  
 束하는 法律의 범위 역시 확대된다. 새로운 生活關係를 規制하기 위하여 종  
 래의 法을 改正하거나 新法을 制定해야 할 필요성에 直面하여 보다 合理的  
 인 法規範을 定立하려면 立法對象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事實과 立法例  
 등을 충분히 인식·검토한 후 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立法에 수반되는  
 諸般事項에 관한 調查過程을 거쳐 立法하게 되는데, 이때 立法家は 필요한  
 諸資料를 모두 찾아 읽어볼 여유가 없을 경우가 흔하고 또한 해당되는 적절  
 한 자료를 適時에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혼란된 경우 역시 별로 기대될 수  
 없다. 그러므로 立法過程上 필요한 情報에 관한 立法調查가 필수적이며, 奉  
 仕提供者는 國家社會가 직면한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보다 合理的인 法  
 規範의 生成을 위해 奉仕해야 한다.

#### (1) 外 國

立法關係者를 위한 參考奉仕를 담당하는 部署로서 外國에서는 國立圖書館  
 의 一部, 立法府의 一部로서 조직하거나 혹은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기도 하  
 는데, <sup>(21)</sup> 美國에서의 立法過程은 代議機關인 議會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立法에 관한 參考奉仕도 議會圖書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議會圖書館에는  
 參考業務擔當部署가 있고 이와는 별개로 立法調查機關이 설치되어 있다. 立  
 法關係者들은 立法에 관련된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공정한 情報를 신속하  
 게 제공받도록 參考司書 및 立法調查機關의 研究調查官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21) Wilson, J.O. "Legislative Reference Service,"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18,  
 No.4, July and August 1964, p.179.

美國議會圖書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奉仕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特定資料나 事實에 관한 檢索, 立法에 관련된 情報를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한 후 평가하여 報告書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과 복사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外國法律에 대한 翻譯奉仕, 政府機關 기타 一般團體의 立法과 政策樹立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등을 들 수 있다. 立法關係情報를 제공하는 이외에 法律案의 草案을 작성하여 주는 봉사<sup>(22)</sup>까지도 담당하며 이밖에 연설원고의 草案도 작성해 준다. 新聞·雜誌·pamphlet·文書 등에 나타나는 立法關係資料를 clipping하여 보관하고 立法過程의 하나인 공청회의 보고서, 法案과 議案 등의 概要書를 작성하여 보존한다.<sup>(23)</sup> 또한 既存法令·舊法令 등의 검색을 쉽게 하여 주는 도구로서의 法令索引을 출판하고 立法에 참고가 될 立法參考資料등의 刊行物도 발행하고 있다.

## (2)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立法의 중심적인 기관은 國會이나, 立法過程中 政府의 참여도 역시 상당히 크다. 즉 法律案의 作成權이 國會와 政府에게 모두 있으므로, 立法關係者에 해당하는 사람은 國會議員·國會諮問委員·行政各部處의 法務擔當官·法制處의 法制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위한 奉仕機關으로서 本稿에서는 國會圖書館과 法制處圖書室을 조사하였다.

國會圖書館은 司書局 參考書誌課와 立法調查局등 부서에서 立法參考奉仕를 제공하도록 조직하고 있다. 오늘날 行政國家化 現狀에 따라 行政府와 같이 탁대하고 전문적인 기관을 가지지 못한 議會는 立法上 自然히 無力化되고 形式化되어 通法機關의 存在意義 밖에 지니지 못하므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 건전한 議會制度를 유지하기 위하여 立法調查機能을 지닌 立法調查局이 설치되었다.<sup>(24)</sup> 立法調查局의 기능을 大別하면, 參考回答業務와 基本調査業務로 나눌 수 있다. 前者는 立法에 기초가 되는 法令의 解釋과 外國의 立

(22) *Ibid.*

(23) “美國國會圖書館”, 國會圖書館報 第1卷 2號, 1964. 5. p. 122.

(24) “國會圖書館의 立法調查活動”, 國會圖書館報 第1卷 1號, 1964. 4. p. 19.

法例 기타 立法資料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때 國會圖書館에 所藏된 자료 및 政府機關과 學術團體 등의 對外資料를 활용하여 회답한다. 後者는 特定資料에 관한 檢索과 수집, 각종형태의 立法關係資料의 file 및 參考回答, 立法參考資料 기타 立法에 관한 pamphlet 등의 형태로 資料를 發刊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參考書誌課에서는 大韓民國法令索引·國會會議錄索引 등을 발간하여 각종 國內法令의 改廢過程과 發效中인 法令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수록하고 있고, 國會圖書館에 새로 수입된 자료에 대한 速報도 발간하고 있다.

法制處에는 調查局調查課 所屬으로 圖書室이 설치되어 있다. 各部處에서 건의된 法律案을 총괄하여 검토하는 기관인 관계로 業務上 外國法令集의 所藏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國內에서는 가장 충실하게 法令集을 골고루 구비하여 法制官 및 法制調查委員등 立法關係業務 從事者와 나아가서는 一般人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專門性·言語上의 障礙로 인하여 司書에게 法律情報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利用者 스스로 檢索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法制處圖書室에는 法令의 公布·改廢·根據法令 및 附屬法令·關係法令 등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法令 card가 file되어 있고, 外國法令을 速報하고, 圖書館에 新着된 法令集을 速報해 주는 봉사가 실시될 뿐 아니라 新着定期刊行物의 回覽奉仕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밖에 法制處所藏 藏書目錄이 발간되었다.

### 5. 一般大衆

우리의 社會生活은 法律에 의하여 支配되고 있어서 모든 生活關係가 法律問題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法律專門家에게만 法律知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社會構成員 個個人이 法律에 관한 知識을 갖고 생활하여야만 효과적인 社會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法律에 관한 情報를 얻기 위한 奉仕要求를 하는 一般人的 類型을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法律이란 일상생활상 항상 요구되는 것이므로 法律에 관한 흥미를 갖고서 일반상식의 하나로 法律知識을 얻고는 하는 부류와

訴訟事件 등 당면한 法律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혹은 法律問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겠다. 물론 後者の 경우 法律實務家로서의 辯護士를 찾아 法律相談을 할 수 있으나 經濟的 理由·辯護士에 대한 不信·自己自身에 대한 過信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sup>(25)</sup> 法律司書의 도움을 받아 本人 스스로 訴訟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도서관이용자들은 醫學圖書館司書에게 그의 건강진단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지만 法律圖書館司書에게는 法律問題에 관한 요구를 거침없이 요구하는데<sup>(26)</sup> 이때 上記한 요구에 응답을 하던 경우에 따라 법률지 축이 필 위험성이 있고<sup>(27)</sup> 윤리면에도 위배되므로 法律司書는 法律에 관한 諮問 즉 法律實務家로서의 業務와 情報를 얻는데 있어서 이용자를 도와주는 그들의 業務사이에 명백한 限界를 설정해야 한다.

#### (1) 外國

辯護士制가 一般化되어 있는 美國社會에서는 규모의 크기를 막론하고 日常生活上 야기되는 法律問題에 대하여 法律專門家로서의 辯護士와 의논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本人 스스로 當面 法律問題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때 그들의 부족한 법률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法律圖書館을 찾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요구하는 情報의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 심각성을 지니며 직무의 성질상 사서가 응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質問內容을 명확히 분석하여 圖書館的 質問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그 이상의 助言은 法律實務家와 相談하도록 혹은 法律扶助制(legal aid)를 활용하도록 권의하고 있다. 아울러 圖書館은 적절한 法律相談을 할 수 있는 專門分野의 辯護士나 法律扶助를 받을 수 있는 施設을 알려주기 위하여 辯護士 및 法律扶助 施設名鑑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sup>(28)</sup> 그리고 輕微한 事件關聯者를 위하여 訴訟節次에 관한

(25) Begg, R. T. "The Reference librarian and the prose patron," *Law Library Journal* Vol. 69, No. 1, February 1976. pp. 28-29.

(26) Heckel, *op. cit.*, p. 275.

(27) 辯護士法 第48條(法律事務의取扱에 관한 團東)

(28) Allen, C. "Whom we shall serve; secondary patrons of the university law school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 66, No. 2, May 1973. p. 170.



情報을 수록한 pamphlet을 발간하여 배부하기도 한다.

(2)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法에 관한 관심이 높아 法律을 전공하지 않은 一般人들도 많은 法律知識을 지니고 있다. 社會의 발전속도가 급격히 빠른 現속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制度에 발맞추기 위하여 法律知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우리나라 法院統計에 의하면 人口 7.2名에 1名 꼴로 國民이 訴訟에 관계하고 있고<sup>(29)</sup> 이 중 少額事件, 輕微한 刑事事件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本人 스스로 訴訟을 수행하고 있어서 法律에 관한 관심도가 지대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圖書館인 國立中央圖書館의 參考擔當部署에서 작성한 圖書館便覽을 보면 「참고회답의 제한 및 금지항목」으로서 法律相談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문의가 오면 無料法律相談所에 문의하도록 제언해 주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法規의 明文內容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 法典을 檢索하여 이를 알려주는 정도의 미비한 봉사를 해줄 따름이다. 國立中央圖書館에서 法律關係書誌資料인 學術論著總合索引(法律篇)을 발간하였는데 이 자료의 이용은 활발하다고 한다.

V. 提言

法律情報을 必要로 하는 利用者에게 法律圖書館이 어떤 樣相의 奉仕를 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外國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比較 檢討하여 보았다. 물론 우리나라의 圖書館奉仕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은 本稿에서 考察된 法律圖書館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圖書館一般에 共通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法律情報의 提供이라는 特殊目的을 지닌 法律參考奉仕는 前提的 條件이 미흡한 상태하에 있어서 奉仕가 더욱 부진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法律參考奉仕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적절한 參考道具의 충분한 所藏, 效

(29) 法院行政處, 司法年鑑 1977. 서울, 法院行政處, 1977. p.114.

果의으로 奉仕할수있는 能力을 지닌 法律司書의 確保 및 參考奉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등 諸般與件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고 주장되고 있다.<sup>(30)</sup> 따라서 法律參考奉仕다운 면모를 지닌 奉仕가 모든 情報要求者에게 提供되어 그들을 만족시켜줄 수있도록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한다.

첫째, 法律司書의 養成을 提言한다. 現段階의 各種 圖書館에서 奉仕를 擔當하고있는 實務者에게서 法律情報를 必要로 하는 利用者들의 要求에 適合한 法律參考奉仕를 기대하기란 근본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法律專門知識을 지닌 사람이 圖書館學에 관한 專門教育을 받아 利用者에게 奉仕할 수 있도록 그들을 圖書館學科 大學院에서 유인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法律司書의 養成方法이겠지단, 이 方法이 現實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할 때에는 아쉬운대로 既存司書를 대상으로 法律知識의 習得을 위한 再教育을 實施하는 것도 그 방법의 되겠다. 그리고 圖書館學教育에 있어서 主題接近方法 (subject—interest method)<sup>(31)</sup> 을 도입·활용함은 主題背景을 지니기에 難點을 안고 있는 圖書館學教育制度를 어느 정도 補完할 수있겠다.

둘째, 法律藏書의 擴充이 이룩되어야겠다. 急變하는 社會에서 生活關係上 必要視되는 各種 法律情報를 일고자 法律圖書館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適切한 情報를 適時에 提供해주기 위하여는 資料를 충분히 所藏하고 있어야 한다. 法律圖書館이 法律參考奉仕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基本的으로 活用하게 되는 資料에 관한 標準藏書目錄을 法律專門家와 協議하여 作成하고, 이를 기초로한 國內外法律資料의 적극적인 수집정책이 요청된다. 그리고 重要 法律圖書館이 자기 資料의 特性化를 꾀하여 特殊種類的 法律資料의 完全所藏을 도모하고, 이들 資料의 폭넓은 利用을 위한 相互協同을 실시하는 것도 奉仕의 확대를 위한 전제가 된다.

세째, 法科大學教育課程에서 法律圖書館利用에 관한 講座를 실시하여야겠

(30) Kenyon, C. W. "The mission of the legal reference librarian," *Law Library Journal* Vol. 58. No. 2, May 1965. p. 125

(31) Houk, W. E. "A subject-interest method for teaching reference,"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 11, No. 2, Fall 1970. pp. 148-55

다. 圖書館의 司書로 부터 效果的인 法律參考奉仕를 提供받을 수없는 現實情下에서는 學生時 및 卒業後에도 法律圖書館의 主된 利用者가 될 이들에게 講座를 실시하는 것이 특히 요망된다. 물론 講座內容의 充實性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資格있는 講師에 의해 擔當되어야 한다는 問題點이 先決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法律資料의 利用에 도움을 주는 書誌資料의 發刊이 이루어져야겠다. 法律資料의 體系的인 利用法을 案内하여 주는 案内書(guidebook)<sup>(32)</sup>가 계속 제공된다면 圖書館職員과 圖書館學科 및 法科大學의 學生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밖에 法律學에 관한 書誌, 索引등을 發刊함으로써 法律資料의 效果的活用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法律文獻이 量的으로 急增하고 法律主題의 範圍가 점차 擴大되고 있으며 資料가 多樣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現實에서는 情報檢索의 自動化가 段階的으로라도 이룩될 것이 요망된다.

(32) 外國에서는 이러한 案内書가 數種 發刊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法律資料의 案内書로는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인 韓國 法律學關係 參考資料에 관한 考察이 유일하게 나와 있을 뿐이다.

## Bibliography

- “國會圖書館의 立法調査活動”, *國會圖書館報* 第1卷 第1號, 1964, 4. pp.19—23
- “美國 國會圖書館”, *國會圖書館報* 第1卷 第2號, 1964, 5. pp.120—24.
- 裴載湜, “法曹教育制度”, *韓國의 法學教育*. 서울, 韓國法學教授會編, 1971.
- 法院行政處, *司法年鑑 1977*. 서울, 法院行政處, 1977. 508p.
- 丁海植, “立法調査局의 性格과 장래”, *國會圖書館報* 第1卷 3號, 1964, 6, pp.41—45
- “하바드大學圖書館; 法律圖書館을 中心으로”, *國會圖書館報* 第2卷 第10號, 1965, 10, pp.82—83.
- 한상완, *大學圖書館參考/情報業務에 있어서 主題專門家の 機能에 관한 研究*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76. 64p.
- 洪明子, *韓國 法律學關係 參考資料에 관한 考察*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75, 11. 117p.
- Allen, C., “Law libraries and collectio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s. Allen Kent, XIV, 1975. pp.86—114.
- Allen, C., “Whom we shall serve; secondary patrons of the university law school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66, No.2, May 1973. pp.160—72.
- Begg, R.T., “The reference librarian and the pro se patron”, *Law Library Journal* Vol.69, No.1, February 1976. pp.26—32.
- Brock, C.A., “Law librarians and libraries; a revisionist history or more than you ever wanted to know,” *Law Library Journal* Vol.67, No.3, August 1974. pp.325—61.
- “Checklist of media and techniques for public relations activities in law libraries”, *Law Library Journal* Vol.61, No.1, February 1968. pp.24—26.
- Cole, G.L., “The subject reference librarian and the academic departments; cooperative venture”, *Special Libraries* Vol.65, No.7, July 1974. pp.259—62.
- Cranston, A., “An expanded legislative reference service,” *Library Journal* Vol.95, No.12, 15 June 1970. pp.2221—22.
- Fiordalisi, V.E., “Law library service to the community,” *Law Library Journal* Vol.46, No.4, November 1953. pp.448—66.
- Goodrum, C.A., “The reference factory revisited; a report on the streamlining of operations in LC’s legislative reference Service” *Library Journal*

Vol.93, No.8, 15 April 1968. pp.1577—80.

Heckel, J.W. "Service to readers" *Library Trends* Vol.11, No.3, January 1963. pp.271—79.

Holt, A.E., "Reference records," *Law Library Journal* Vol.52, No.2, May 1959. pp.145—49.

Houk, K., "A subject-interest method for teaching reference,"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 11, No. 2, Fall 1970. pp.148—55.

Jacobstein, J.M., "Law library administration," *Library Trends* Vol. 11 No.3, January 1963. pp.237—43.

Kenyon, C.W. "The mission of the legal reference librarian", *Law Library Journal* Vol.58, No.2, May 1965. pp.123—29.

Marke J., "The glorious uncertainty of law librarianship" *Law Library Journal* Vol.57, No.1, February 1964. pp.2—7.

Price, M.O. and H.Bitner *Effective Legal Research*, Little; Brown and Company, 1962, 496p.

"Reader services in law libraies", *Law Library Journal* Vol.64, No.4, November 1971. pp.486—506.

Roalfe, W.R. "Some observations on the development of law library service in the emerging nations" *Law Library Journal* Vol.57, No.4, November 1964. pp.366—401.

Sadow, S. and B.R. Beede, "Library instruction in American law schools," *Law Library Journal* Vol.68, No.1, February 1975. pp. 27—32.

Silverman, H.W., "Operation complex; what are we doing and where are we going?" *Law Library Journal* Vol.66, No.2, May 1973. pp.143—59.

Straker, C., "Law libraries—development, directions, services", *Law Library Journal* Vol.57, No.1, February 1964. pp.18-25.

Wilson J.O. "Legislative reference service"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18, No.4, July/August 1964. pp.178-83.

## The Reference Services of a Law-library in Korea

Hong, Myung Ja\*

[Abstract]

By 'a democratic society' we mean, in some respect, a law governed society. As citizens living today in such a society, we find it difficult to turn away from the important implication of law

Various problems caused by social relation among people may be solved by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law and its practice. As a result,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people involved in the legal profession increasingly realize the necessity of law information as the key of problem-solving.

Jurisprudence as a discipline dealing with legal aspects of complex social system has had a long history of growth and its professionalism has been firmly established including a wide range of related jobs and personnels involved.

A law library, a kind of special library rendering many service to the cause of jurisprudence, should provide the quantity and variety of law information needed for us, and also should be equipped with qualified librarians familiar with both subject-knowledge and librarianship.

But unfortunately very few libraries which satisfy above-mentioned conditions are to be found in Korea. It can rather be said that law librarianship has not yet been introduced to the coun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preliminary research as to the introduction of law-librarianship into Korea, by aiming at clarifying how the reference services as a core function of law libraries should be performed, and by surveying the actual state of reference services of every type of law libraries in Korea.

\*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Hyosung Women's Collge.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the study of the literature on the law-library services performed by advanced countries. The interview with some practitioners has also been made.

The contents of the services are classified by law information-user types since it is not possible to analyze the services by different types of law-libraries under our present circumstances. These types of users comprise students, researchers, professors, lawyers, lawmakers and the general public.

The law-information needs of these users should be met by a fullscale law-libraries furnished with facilities for efficient reference services such as proper collection, qualified law-librarians and adequate equipments.